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4년 2월 6일

□ **정정 사유**

1. I클래스 가입자격 변경
2.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추가 (환매조건부 매수)
3.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
4.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

□ **정정 내용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안내	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<a href="#">간이 투자설명서</a>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<a href="#">2013.7.25 투자신탁 최초 설정</a> <a href="#">2014.2. I클래스 가입자격 변경</a>
	-	<a href="#">모투자신탁 연혁</a> <a href="#">2013.7.25 최초 설정</a> <a href="#">2014.2 투자대상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</a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I클래스(펀드코드: AK028) :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·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	<a href="#">I클래스(펀드코드: AK028) :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·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,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인</a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, 투자대상	<a href="#">&lt;신 설&gt;</a>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- 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모투자신탁 [주식] <a href="#">8) 환매조건부 매수</a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	-	<a href="#">&lt;트러스톤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&gt; 변경</a>

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	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2) 종류별 매입자격	I클래스(펀드코드: AK028) :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시행령 제 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조제3항제12호·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	<a href="#">I클래스(펀드코드: AK028) :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·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,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인</a>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3) 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	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<u>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을 권유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.</u>	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<u>판매할 수 없습니다.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<u>주4)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	<a href="#">〈삭 제〉</a>
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<p>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수익자총회 등</p>	<p>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</p> <p>② <u>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.</u> 다만,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</p> <p>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</p>	<p>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</p> <p>② <u>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.</u> 다만,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<u>다만,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(이하 "간주의결권행사"라 한다.)한 것으로 봅니다.</u></p> <p><u>1.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</u></p> <p><u>2.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</u></p> <p><u>3.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</u></p> <p><u>4.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</u></p> <p>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</p>
--	--	--

<p>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(이하 “연기수익자총회”라 한다.)를 소집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⑤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.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. 다만,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(이하 “연기수익자총회”라 한다.)를 소집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⑥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. 다만,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.</p>
<p>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</p>	<p>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<u>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-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</p>
<p>(4)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</p>	<p>(4) 반대매수청구권 <u>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</u></p>

	<p>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</p>	<p><u>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(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</p> <p><u>②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</u></p>
<p>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라. 손해배상책임</p>	<p>⑤ 해당 증권의 <u>인수계약을 체결한 자</u></p> <p>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 신고 당시의 <u>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</u></p>	<p>⑤ 해당 증권의 <u>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)</u></p> <p>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 신고 당시의 <u>매출인</u>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</p>	<p>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,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-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<u>행사여부 및 그 내용(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)</u>이 기재된 서류</p>	<p>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,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-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<u>행사내용 및 그 사유</u>가 기재된 서류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</p>	<p>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</p>	<p>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</p>

<p>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</p>	<p>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-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</p>	<p>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-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<u>전화·전신·모사전송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</u>으로 표시한 경우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</p>	<p>- 신탁계약기간의 변경</p>	<p>-신탁계약기간의 변경(<u>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</u>)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. <u>- 합병, 영업의 양도·양수, 임원의 임면,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</u> -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<u>-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: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</u>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. -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<u>주주총회일 5일전까지</u>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<u>-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</u>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. <u>-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</u> -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<u>및 그 사유</u> <u>&lt;삭 제&gt;</u> ②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<u>주주총회일부 터 5일 이내</u>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<u>의결권 행사 내용</u>을 공시해야 합니다. <u>&lt;삭 제&gt;</u></p>

	<p>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</p> <p>③ <u>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,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.</u></p>	<p>〈삭 제〉</p>
--	--	--------------